

# 食 品 衛 生 法

(1962. 1. 20公布)  
(法律第 1007號)

## 第1章 總 則

**條 1 第 (目的)** 本法은食品으로인한衛生上的危害의防止와食品營養의質의向上을圖謀함으로써國民保健의向上과增進에寄與함을目的으로한다

**第 2 條 (定義)** ① 本法에서食品이라함은모든飮食物을말한다 但醫藥으로서取扱하는것은例外로한다

② 本法에서添加物이라함은食品의製造, 加工또는保存을함에있어食品에添加, 混合, 浸潤其他의方法에依하여使用되는物質을말한다

③ 本法에서化學의合成品이라함은化學的手段에依하여元素또는化合物에分解反應以外的化學反應을 일으켜얻은物質을말한다

④ 本法에서器具라함은飮食器其他食品또는添加物의採取, 製造, 加工, 調理, 貯藏, 運搬, 陳列, 授受또는攝取에使用되는것으로서食品또는添加物에直接接觸되는機械器具를말한다

⑤ 本法에서容器, 包裝이라함은食品또는添加物을 넣거나싸는物品으로서食品또는添加物을授受할때 함께引渡되는物品을말한다

⑥ 本法에서標示라함은食品, 添加物, 器具또는容器包裝에明示된文字또는圖形을말한다

⑦ 本法에서食品衛生이라함은食品, 添加物, 器具 및容器와包裝을對象으로하는飮食에關한衛生을말한다

⑧ 本法에서營業이라함은食品또는添加物을採取, 製造, 加工, 輸入, 調理, 貯藏, 또는販賣하는業을말한다

⑨ 本法에서調理士라함은調理士免許를받아食品을調製하는것을業으로하는者를말한다

⑩ 本法에서營養士라함은營養士免許를받아營養의指導를하는것을業으로하는者를말한다

⑪ 本法에서集團給食所라함은營利를目的으로하지 아니하고繼續의으로多數人에게飮食을供給하는寄宿舍, 學校, 病院, 其他厚生機關等の給食施設을말한다

## 第2章 食品및添加物

**第 3 條 (販賣禁止)** 다음各號의 1에該當하는食品또는

添加物은販賣(販賣以外的授與도包含한다以下 같다) 使하거나販賣할目的으로採取, 製造, 輸入, 加工, 用, 調理또는貯藏하거나陳列하지못한다

1. 腐敗또는變質되었거나未熟한것 但一般的으로人體의健康을害할憂慮가없고食用으로서無妨하다고認定되는것은例外로한다

2. 有毒또는有害物質이含有되었거나附着한것 但人體의健康을害할憂慮가없다고保健社會部長官이認定하는것은例外로한다

3. 病原微生物에依하여汚染되었거나 또는그의念慮가있어人體의健康을害할憂慮가있는것

4. 不潔하거나異物の混入또는添加 其他의事由로人體의健康을害할憂慮가있는것

**第 4 條 (病肉等の販賣禁止)** 保健社會部令의定하는疾病에걸렸거나그의念慮가있거나또는病死한獸畜(牛馬, 綿羊, 山羊, 豚 其他保健社會部令의定하는動物을말한다)의 肉, 骨, 乳汁, 臟器또는血液을食品으로서販賣하거나販賣할目的으로採取輸入, 加工使用, 調理또는貯藏하거나陳列하지못한다

**第 5 條 (化學의合成品の販賣禁止)** 閣令으로定한化學의合成品以外的化學의合成品과이를含有한製劑를食品의添加物로使用하거나이를含有한食品을販賣하거나販賣의目的으로製造, 輸入, 加工, 使用, 調理또는貯藏하거나陳列하지못한다

**第 6 條 (基準과規格)** ① 保健社會部長官은國民保健上特히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保健社會部令으로販賣를目的으로하는食品또는添加物의製造, 加工, 使用, 調理및保存의方法에關하여必要한基準과그食品또는添加物의成分에關하여必要한規格을定할수있다

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基準과規格이定하여졌을때에는食品또는添加物은그基準에 맞는方法에依하여製造, 加工, 使用, 調理또는保存되어야하며그基準과規格에 맞지 아니하는食品또는添加物은製造, 輸入, 加工, 使用, 調理또는保存하거나販賣하지 못한다

## 第3章 器具와容器, 包裝

**第 7 條 (有毒器具等の販賣, 使用禁止)** 有毒또는有害

物質이含有되었거나附着되어人體의健康을害할憂慮가있는器具및容器, 包裝과食品또는添加物에接觸됨으로써人體의健康을害할憂慮가있는器具, 容器및包裝을販賣하거나販賣의目的으로製造, 輸入하거나또는營業上使用하지못한다

**第8條 (基準과規格)** ① 保健社會部長官은國民保健上특히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保健社會部令으로써販賣를目的으로하거나營業上使用하는器具와容器, 包裝과그原材料에關한規格과그製造方法에關하여必要한基準을定할수있다

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基準과規格이定하여졌을때에는器具와容器包裝은그基準에 맞는方法에依하여製造하여야하며그基準과規格에 맞지 아니하는器具와容器, 包裝은製造, 輸入또는販賣하거나營業上使用하지못한다

### 第4章 標 示

**第9條 (標示基準)** ① 保健社會部長官은國民保健上특히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保健社會部令으로써販賣를目的으로하는食品 또는添加物과前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規格또는基準이定하여진器具와容器, 包裝의標示에關하여必要한基準을定할수있다

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標示에關한基準이定하여진食品, 添加物, 器具와容器, 包裝은그基準에 맞는標示가없으면이를販賣하거나販賣의目的으로陳列하거나營業上使用하지못한다

**第10條 (虛偽標示禁止)** 食品, 添加物, 器具와容器, 包裝에關하여國民保健에危害를끼칠憂慮가있는虛偽標示其他의標示를하지못한다

### 第5章 食品添加物公典

**第11條 (食品添加物公典作成)** 保健社會部長官은食品添加物公典을作成하여第6條第1項의規定에依한基準과規格이定하여진添加物과第9條第1項의規定에依한基準이定하여진添加物에關하여當該基準과規格을收錄하여야한다

### 第6章 檢 査

**第12條 (製品檢査)** ① 保健社會部長官또는서울特別市長, 道知事は國民保健上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販賣를目的으로하는食品, 添加物, 器具와容器, 包裝의製品에關하여檢査를할수있다

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製品檢査를할수있는食品添加物, 器具와容器, 包裝의種類와그製品檢査의方法, 節次, 手數料其他檢査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第13條 (製品檢査의標示)** 保健社會部長官또는서울特別市長, 道知事は前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 製品檢査를하였을때에는保健社會部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그製品檢査에合格한食品, 添加物, 器具와容器, 包裝에그뜻을標示하여야한다

**第14條 (無標示品の販賣禁止)** 第12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製品檢査를받아야할食品, 添加物, 器具와容器包裝은그製品檢査에合格한뜻의標示가없으면이를販賣하거나賣販할目的으로陳列하거나營業上使用하지못한다

**第15條 (輸入)** 販賣를目的으로하거나營業上使用에있어衛生上危害를끼치고認定되는食品또는添加物, 器具와容器, 包裝을輸入하고자하는者は保健社會部長官의承認을받은後貿易法에依한所定の節次를取하여야한다

**第16條 (臨檢, 收去等)** ① 保健社會部長官또는서울特別市長, 道知事は本法의實施를爲하여不得已하다고認定할때에는營業을하는者 (以下營業者라한다) 또는其他關係인에對하여必要한報告를하게하거나關係公務員으로써어금營業의場所, 事務所倉庫其他의場所에臨檢하여販賣를目的으로하거나營業上使用하는食品, 添加物, 器具와容器, 包裝營業의施設其他의物件을檢査하게할수있으며實驗上必要한程度의食品, 添加物, 器具와容器, 包裝을收去하게할수있다 但必要에따라營業關係의帳簿나書類를閱覽하게할수있다

② 前項의境遇에關係公務員은臨檢檢査또는收去할수있는權限을表示하는證票를携帶하여야하며關係인에게이를提示하여야한다

**第17條 (食品衛生檢査機關의指定)** ① 保健社會部長官또는서울特別市長, 道知事は 第12條第1項의規定에依한製品檢査와前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收去한食品, 添加物, 器具와容器, 包裝의實驗에關한事務를行하게하기爲하여必要한公共機關에서食品衛生檢査機關을指定할수있다

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食品衛生檢査機關으로指定된機關은正當한事由없이 이를拒絕하지못한다

**第18條 (食品衛生監視員)** ① 第16條第1項의規定에依한關係公務員의職務를行하게하기爲하여保健社

會部에서 特別市, 道에 食品衛生監視員을 둔다

- ③ 食品衛生監視員은 本法違反者에 對하여 告發할 義務가 있다
-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 任命, 職務와 其他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한다

### 第7章 營 業

- 第19條 (食品衛生管理人)** ① 乳製品化學의 合成品인 添加物 其他 閣令으로 定하는 食品 및 添加物을 製造 또는 加工하는 營業者는 그 製造 또는 加工을 衛生的으로 管理하게 하기 爲하여 그 施設마다 專任의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但 營業者 自身이 食品衛生管理人이 되어 直接管理하는 施設에 對하여 例外로 한다
- ② 食品衛生管理인은 當該 施設에 있어서 그 管理에 屬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에 關하여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한 命令 또는 處分에 違反되지 아니 하도록 그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 또는 加工에 從事하는 者를 監督하여야 한다
- ③ 食品衛生管理인 的 資格과 其他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 第20條 (遊興營業從事者의 登錄等)** ① 飲食店 營業中 保健社會部 令으로 定하는 業種 (以下 遊興營業이라 한다)을 除外하고는 食品의 加工調理等 勞役以外에 遊興에 從事하는 者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遊興營業에 從事하고자 하는 者는 서울特別市 또는 道에 登錄하여야 하며 遊興營業者는 登錄되지 아니한 者를 營業에 從事시킬 수 없다
-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對象者의 範圍登錄의 申請 登錄證의 交付 登錄의 取消과 遊興營業者 및 本條에 依하여 登錄된 從事者의 遵守事項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 令으로 定한다

- 第21條 (健康診斷)** ① 食品 및 添加物을 採取, 製造, 加工, 調理, 貯藏 또는 販賣하는 營業에 從事하는 者는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健康診斷을 받은 結果 他人에 對하여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된 者는 그 營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 ③ 營業者는 前2項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나 健康診斷의 結果 他人에 對하여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된 者를 그 營業에 從事시키지 못한다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의 實施方法 및 營業에 從事하지 못하는 疾病의 種類와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 令으로 定한다

**第22條 (施設基準)** 飲食店 營業 其他 閣令의 定하는 營業에 對하여는 保健社會部 令으로 業種別 施設基準을 定한다

- 第23條 (營業許可)**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閣令의 定하는 법에 依하여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營業場所 또는 施設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할 때에는 必要한 條件을 附할 수 있다

**第24條 (廢棄處分等)**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營業者가 第3條乃至第5條, 第6條第2項 第7條, 第8條第2項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營業者 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금식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을 廢棄하게 하거나 其他 營業者에 對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除去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하고 또는 營業許可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을 停止시킬 수 있다

**第25條 (營業許可等의 取消)**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營業者가 第9條第2項, 第14條, 第19條第1項, 第20條의 各 項, 第21條第8項 또는 第27條의 規定 또는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條件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營業許可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을 停止시킬 수 있다

- 第26條 (施設의 改修命令等)**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營業者가 그 營業의 施設에 關하여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施設基準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期間을 定하여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 ②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營業者가 前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施設의 改修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營業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 第8章 調理士 및 營養士

**第27條 (調理士)** 閣令의 定하는 飲食店과 集團給食所에 는 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但 飲食店의 營業者와 集團給食所의 經營者 自身이 調理士가 되어 直接 飲食을 調製하는 飲食店과 集團給食所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第28條 (營養士)** 閣令의 定하는 集團給食所에 는 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但 集團給食所의 經營者 自身이 營養士가 되어 直接 營養의 指導에 從事하는 集團給食所에 있어서는 例外로 한다

**第29條 (調理士 免許)**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學校 또는 養成機關을 修了한者
2. 調理士資格試驗에 合格한者
3. 外國에서 調理士免許를 받은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適當하다고 認定하는者

**第30條 (營養士의 免許)** 營養士가 되 고자 하는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學校 또는 養成機關을 修了한者
2. 營養士資格試驗에 合格한者
3. 外國에서 營養士免許를 받은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適當하다고 認定하는者

**第31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者는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될 수 없다

1. 精神病患者 또는 心身耗弱者
2. 傳染病患者
3. 麻藥其他有毒性物質에 中毒된者
4. 素行이 極히 不良한者로서 調理士 또는 營養士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者

**第32條 (免許取消)**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營養士 또는 調理士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한다

1. 前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
2. 調理士가 그 調理業務에 있어서 食中毒其他 衛生上 重大한 事故를 發生하게 하였을 때

**第33條 (名稱使用의 禁止)**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아닌 調理士 또는 營養士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34條 (委任事項)** 調理士 및 營養士의 資格試驗, 免許 手數料, 學校 및 養成機關의 指定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 第9章 食品衛生審議委員會

**第35條 (食品衛生審議委員會)** 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依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調査審議하게 하기 爲하여 保健社會部에 食品衛生審議委員會 (以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食中毒防止에 關한 事項
2. 食品添加物 公典作成에 關한 事項
3. 食品 및 添加物의 基準 規格의 制定에 關한 事項
4. 食品衛生과 玩弄品衛生에 關한 事項
5. 其他 重要한 事項

**第36條 (委任事項)** 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 第10章 雜 則

**第37條 (國庫補助)** 保健社會部長官은 每年度 豫算의 範圍內에서 다음 各號의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1. 第16條 第1項(第4 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收去에 要하는 經費
2. 第17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食品衛生 檢査機關에서의 檢査와 實驗에 要하는 經費
3.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食品衛生 監視에 要하는 經費
4. 第21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健康 斷診 實施에 要하는 經費
5. 第24條 (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廢棄에 要하는 經費
6. 第49條 (第40條 第1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死體의 解剖에 要하는 經費

**第38條 (食中毒에 關한 調査報告)** ①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에 起因하여 中毒을 일으킨 患者 또는 그 疑心이 있는者를 診斷하였거나 그 死體를 檢査한 醫師는 遲滯없이 管轄 保健所長 또는 그 支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但 保健所와 그 支所가 없는 境遇에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市, 邑, 面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保健所長, 그 支所長 또는 서울特別市長, 市, 邑, 面長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받았을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遲滯없이 그 眞狀을 調査하고 市, 邑, 面長은 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支所長은 保健所長을, 邑, 面長은 郡守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③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를 하였거나 報告를 받았을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遲滯없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39條 (死體解剖)**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에 起因한 疾病 또는 그에 起因하였다고 疑心되는 疾病으로 死亡한者의 死體를 그 遺族의 同意를 얻어 解剖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死體를 解剖하지 아니하고서 는 그 原因을 判明할 수 없고 그로 因하여 國民 保健에 重

大한危害를끼칠憂慮가있다고認定할때에는遺族의 同意를받지아니하여도그遺族에게通知를한後에 死體를解剖할수있다

③ 前2項의規定은刑事訴訟法の 規定에依한強制處分을排除하지아니한다

④ 第1項또는第2項의規定에依하여死體를解剖할때에는特히禮儀를지켜야한다

**第40條** (玩弄品및集團給食所에의準用規定) ③ 乳幼兒가接觸함으로써그健康에害를끼칠憂慮가있는玩弄品으로서保健社會部長官이指定하는것에關하여는第3條第5條乃至第10條, 第12條乃至第17條, 第19條乃至第26條, 第38條및前條의規定을準用한다

② 集團給食所에對하여는第7條乃至第9條, 第14條第16條, 第17條, 第21條, 第22條, 第24條乃至第26條의規定을準用한다

**第41條** (施行令) 本法施行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 第11章 罰 則

**第42條** (罰則) 食品衛生監視員이本法에違反된事實을故意로默過하였을때에는3年以下の懲役또는5年以下の資格停止에處한다

**第43條** (同前) ① 第3條(第40條第1項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第4條또는第5條(第40條第1項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의規定에違反한者는3年以下の懲役또는50萬圓以下の罰金에處한다

② 前項의境遇에懲役과罰金은이를併科할수있다

**第44條** (同前) ① 第6條第2項(第40條第1項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第7條(第40條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第15條(第40條第1項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또는第23條第1項(第40條第1項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이規定에違反한者는1年以下の懲役또는20萬圓以下の罰金에處한다

② 前項의境遇에懲役과罰金은이를併科할수있다

**第45條** (同前) 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者는6月以下の懲役또는10萬圓以下の罰金에處한다

1. 第8條第2項(第40條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 第9條第2項(第40條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第10條(第40條第1項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第14條(第40條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 또는第38條第1項(第40條第1項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의規定에違反한者

2. 第22條(第40條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의

規定에依한施設基準또는第23條第2項(第40條第1項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의規定에依한條件에違反한者

3. 第24條乃至第26條(第40條에서準用하는境遇를各各包含한다)의規定에依한處分또는命令에違反한者

4. 第27條또는第28條의規定에違反한者

**第46條** (同前) ① 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者는10萬圓以下の罰金에處한다

1. 第16條第1項(40條에서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의規定에依한關係公務員의臨檢, 檢査또는收去를拒否하거나妨害또는忌避한者

2. 第33條의規定에違反한者

3. 本法에依한報告를하지아니하거나虛偽의報告를한者

**第47條** (兩罰規定) 法人의代表者또는個人의代理人, 使用人其他從業員이그法人또는個人의業務에關하여第43條乃至前條의違反行爲를하였을때에는行爲者를處罰하는外에그法人또는個人에對하여도各本條의罰金刑을科한다

### [附 則]

① 本法은公布한날로부터90日을經過한後에施行한다

② 다음各號의法令은이를廢止한다

1. 西紀1900年法律第15號飲食物其他物品取締規則에關한件

2. 西紀1911年總令第133號衛生上有害飲食物및有害物品取締規則

3. 西紀1912年總令第121號에칠알물(木精)取締規則

4. 西紀1611年總令第134號清涼飲料水및水雪營業取締規則

5. 西紀1916年警令第2號料理屋, 飲食店營業取締規則

6. 西紀1945年軍政法令第23號酒精飲料의販賣禁止

7. 西紀1946年軍政法令第83號公設浴場및飲食店의免許中本法에抵觸되는條項

8. 西紀1940年總令第114號朝鮮牛乳營業取締規則

9. 西紀1916年警令第3號藝妓耐婦, 藝妓置屋取締規則

③ 本法施行當時從前의法令에依하여받은營業許可는本法에依하여받은許可로본다 但本法에依한施設基準에適合하지아니하는施設은本法施行日로부터1年以內에本法에依한施設基準에適合하도록그施設을改修하지아니할때에는그營業許可를取消한다